

학 칙

1994.03.01(제정). 1995.03.01(개정). 1996.03.01(개정). 1996.09.01(개정).
1996.12.17(개정). 1997.01.13(개정). 1997.07.23(개정). 1997.09.30(개정).
1998.03.01(개정). 1999.03.01(개정). 2000.03.01(개정). 2001.03.01(개정).
2002.03.01(개정). 2003.03.01(개정). 2004.01.26(개정). 2004.06.18(개정).
2005.03.01(개정). 2005.11.14(개정). 2006.03.01(개정). 2008.03.01(개정).
2009.03.01(개정). 2010.03.01(개정). 2011.03.01(개정). 2012.03.01(개정).
2013.03.01(개정). 2013.12.01(개정). 2016.03.01(개정). 2016.05.24(개정).
2016.12.13(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동아보건대학교라 한다. < 2012. 2.10 개정 >

제3조(위치) 본 대학은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에 둔다.<2012. 2.10개정>

제4조(설치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부 및 학과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2013. 2. 18 개정> <2013. 11.26 개정> <2015. 2.16 개정> <2016. 2.22 개정>

설치학부(학과)·전공	주간	야간	학사학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 치기공과(3년제) • 치위생과(3년제) • 간호학과(4년제) • 안경광학과(3년제) • 응급구조과(3년제) • 작업치료과(3년제) • 임상병리과(3년제) 	80 40 30 120 20 30 30 30		
<u>·사회·선교복지학부</u> -사회복지전공(주,야) -사회복지행정전공 -실용음악전공 - <u>청소년교육상담·평생교육복지전공(야)<명칭변경></u> -선교복지전공 -찬양복지전공	19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선교복지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u> 			<u>주간 30</u> <u>야간 20</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복지학부</u> -글로벌호텔조리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동물간호전공 -동물매개복지전공 -<u>자동차정비튜닝전공<학부통합></u> -<u>토목과(야)<학부통합></u> 	136	20	
계(9개 학과, 2개 학부, 13개 전공)	706	70	50

제4조의 1(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3. 2. 18 신설> <2016. 5. 24 개정>

제4조의 2(계약학과 편성 및 정원)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4조의 3(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4조의 4(계약학과 납부금)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4조의 5(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4조의 6(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4조의 7(계약학과 폐지에 다른 경과 조치) <2013. 2. 18 신설> <2016. 5. 24 삭제>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우리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2008. 2. 12 개정> <2011. 2. 11 개정> <2013. 11.26 개정>

②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2010. 2. 17 신설>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1. 2.11 개정> <2016. 2.22 개정>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4학기제로 나눌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제2학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학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제4학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1. 3. 1 개정>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4학기제의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는 조정할 수 있다. <2001. 3. 1 개정>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6월부터 8월사이(단, 계절학기 기간 제외)
2. 동기휴가: 12월부터 2월사이(단, 계절학기 기간 제외) <2002. 3. 1개정>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법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 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수업일수 1/4일 이내로 한다.(단, 신입학의 경우는 교육부의 입학전형일정에 따름) 다만, 편입학의 허가는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2004. 1. 5 개정> <2013. 11.26 개정>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수험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2. 3. 1 개정>

1. 학교생활기록부(고교생활기록부)
2.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성적표 사본)
3. 종합생활기록부 사본(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4. 추천서(학교장, 기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과 다음 각 호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정원의 입학)에 해당하는 자('99.3.1)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각호(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의 2(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2016.12.13. 개정>

②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1. 3. 1 개정> <2016.12.13 개정>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5조의 2(2중 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3학년 편입자는 2학년, 4학년 편입자는 3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해당 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졸업자·대학졸업자, 외국에서 수학한 자와 군복무중 폐과된 학과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 <2013. 11.26 개정>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03. 3. 1>

③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신설 2003. 3. 1>

④ 우리대학 간호과 3년제 졸업자는 1년 경과 후 편입이 가능하다. <2013. 11.26 신설>

제16조의 2(전과) ①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초 또는 제2학년 1학기 초 (단, 3년제학과는 제2학년 2학기 초까지)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2002. 3. 1 개정> <2013. 11.26 개정>

② 전과는 전입학과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와 관련된 학과로의 전과는 학과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3. 3.1개정>

③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 할 수 있다.

④ 전과 대상학과 범위는 대상 학과간의 관련성, 교과목 이수 가능성, 수업 및 재학년한, 학과(전공)관련 자격증 취득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전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3. 3. 1 개정>

⑤야간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만, 학과 입학정원의 범내에서는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2002. 3. 1 개정>

⑥전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2. 3. 1 신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매학기초 수업일수 1/4일 이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6. 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학부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2006. 2. 10 개정>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은 타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06. 2. 10 개정>

④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재입학은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종전 재적했던 학과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산업체의 장의 위탁교육 추천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06. 2. 10 신설(조항이전)>

⑤항 <2013. 11.26 삭제>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일반휴학시 제출서류 : 보호자 인감증명 1통, 휴학원(보호자, 지도교수연서)
2. 군입대 휴학시 제출서류 : 징집영장 사본, 휴학원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해야 하며,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되어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복학이 가능하다.(신설 '99.3.1)

⑥ 휴학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였을 경우 휴학당시 재학하였던 모집단위와 동일학기, 동일시기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학점의 추가신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그 인상차액을

정수하지 않는다.(신설 '99.3.1)

⑦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 복학을 희망한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입대휴학으로 소급적용하여 복학을 허용한다.(신설 '99.3.1)

제20조(퇴학)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본 대학 재적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제적한다.(개정 '99.3.1)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나누며 교양 및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2013. 11.26 개정> <2016. 2. 22 개정>

②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2016. 2. 22 개정>

③ 현장실습의무 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실무와 현장중심의 심화과정으로 편성한다.

<2010.2.17 신설>

제22조의 2(교육과정의 연계)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교, 대학교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2. 3. 1 신설>

제22조의 3(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9월학기 입학,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2. 3. 1 신설>

<2013. 11.26 개정>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서 3개월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산업체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기술교육 확대와 성별·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다.(개정 '99.3.1)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비정규 특별과정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23조의 2(시간제 등록) ①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고교졸업자 기타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본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2008. 2. 12 개정>

②학기별 신청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타 시간제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0. 3. 1>

제23조의 3(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항 <2013. 11.26 삭제>

③항 <2013. 11.26 삭제>

제23조의 4(평생교육원의 설치·운영) ①본 대학에 지역사회 주민 및 직장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2013.2.18 개정>

②평생교육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0. 3. 1 신설>
<2013.2.18 개정>

제23조의 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본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10. 2.17 신설><2016. 2. 22 개정>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6. 2. 22 개정>

제24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016. 2. 22 개정>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80학점(3년제 학과는 120학점, 4년제 학과는 14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2004.1.5개정> <2013. 11.26 개정>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2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6. 2. 10 개정>

⑥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교양교과중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은 30시간 이상이면 1학점(60시간 이상인 경우 2학점)으로 하되 사회봉사활동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외에 특별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개설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신설 2012. 2.11>

제24조의 2(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이를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1. 3. 1 개정>

② 편입학생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99. 3. 1> <제27조의 2에서 조항이관 2000. 3. 1>

③ 군복무중 원격강좌 수강 취득학점은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로 한다. <2008. 2. 12 신설, 2009. 2.16 개정>

④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이수 취득학점은 타 대학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2.16>

제25조(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통신(인터넷 강좌) 기타 각종 매체의 활용으로 출석수업을 가름할 수 있고, 출석수업을 받기 어려워 사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대체고사로 출석수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0. 3.1 신설>

③ 졸업학기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졸업학기 취업생 특례규정에 의한다. <2016. 11. ??, 신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며,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관련된 교과목은 수행준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 2. 22 개정>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신설 2011. 2.11>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의 2<폐지, 제27조의 2로 조항이관 2000. 3. 1>

제28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 한다.

제29조(경고) 성적 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및 별지 4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13. 11.26 개정>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15.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 계

2. 18 개정>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120학점 이상<2003. 3. 1 신설>
4. 4학년 수료: 140학점 이상
5. 학점 미달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2003.

3. 1 조항이동> <2013. 11.26 개정>

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8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4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12.2.10>

제30조의 2(학위수여 취소) ①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한 경우,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16. 2. 22 신설>

②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취소한다. <2016. 2. 22 신설>

제30조의 3(졸업유보)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유보할 수 있다. <2013. 11. 26 신설>

제 8 장 학 생 활 동

제31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 스스로 건전한 학풍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2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35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37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39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0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002. 3. 1 개정>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5. 교내·외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 <2002. 3. 1 신설>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제43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금의 등록방법은 총액 또는 학점당 등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정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99.3.1)

② 기성회비,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납입금 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 분납제를 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16. 2. 22 신설>

제44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장 장 학 금

제45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o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세부적인 장학금 지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교무위원회

제46조(구성) ①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제47조(회의 및 심의) ① 회의는 학기 중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방학 중에는 격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단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과 장학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계획 수립과 평가
 - 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 다.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 라. 학생 실험실습(현장(임상)실습 포함)의 운영기구 및 시행 평가
5. 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 가. 장기 종합시설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나. 실험실습실 및 기구의 확충계획

- 다. 학내 후생복지시설 계획 및 시행
 - 6. 학사연구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가. 학과 및 학생정원 조정
 - 나. 각종 규정수립 및 폐지 결정
 - 다. 입학 및 졸업(학생)에 관한 사항
 - 라. 각종 교내의 행사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
-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의 2 대학평의위원회 <2008. 2. 12 신설>

제47조의 2(목적) 본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의 3(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5명
3. 학생 : 1명

제47조의 4(심의사항)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2009. 2.16 개정>

1. <2009. 2.16 삭제>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47조의 5(운영) 평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의 3 기타 위원회

제4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총장은 학생의 모집, 선발에 관한 제반사항 및 입

입학전형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2009.2.27 개정>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총장은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수립 및 입학전형 전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지원자의 이의제기 내용, 내부심사 등 공정한 입학전형을 위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009.2.27 개정.> < 2016.12.13 개정>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총장은 등록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03. 3.1>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실험실습 운영위원회) ①실험실습운영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기타) 학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3 장 직 제

제53조(교직원) 본 대학에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 교원과 기타 사무직원을 둔다. <2013.2.18. 개정> ① 본 대학에는 교학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홍보처, 학생지원처, 실습지원처, 정보화협력처, 대외자료처, 사무국을 둔다.<2009. 2.16 개정>

② 교학처에는 교무과, 수업과, 인재육성지원센터, 종합행정실을, 기획처에는 기획과를, 산학협력처에는 산학협력지원과, 취·창업지원역량과를,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과, 사무국에는 총무과, 경리과, 서무과를 둔다. <2009. 2.16 개정> <2011. 2.11 개정> <2016. 2.22 개정>

③ 각 처·국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정리하고 처·국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09. 2.16 개정>

④ 각 처·국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속·부설 기관

제54조(부속·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속·부설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2001. 3. 1>
 3. 전자계산소
 4. 신문방송국<통합 2001. 3. 1>
 5. 산학협력단 <2004. 1. 5 신설>
 6. <삭제 2013.2.18>
 7. <삭제 2016. 2. 22>
 8. 기숙사
 9. <삭제 2013. 2.18>
 10. 국제교육원<2006. 3. 1 신설>
 11. 평생교육원<2002. 3. 1 개정>
 12. 교수학습지원센터<2013. 2.18 신설>
 13. 학생상담센터<2013. 11.26 신설>
 14. 장애학생지원센터<2013. 11.26 신설> <2016. 5. 24. 명칭변경>
 15. 보건실<2013. 11.26 신설>
 16. NCS지원센터<2015. 2. 16 신설>
 17. 취·창업지원센터<2016. 2. 22 신설>
- ② 부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보 칙

제5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였거나, 동등한 자격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 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4. 1.5 개정>

② 제1항의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1999.3.1, 2009. 2.16 개정>

②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예고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 한다. <2013. 11.26 개정>

⑤ 개정된 학칙은 공포 후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9. 2.16> <2013. 11.26 개정>

제58조(성희롱 처벌) ① 총장은 학내 구성원간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등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성희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2. 3. 1 신설>

③ 성범죄 등 교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다.<2015. 2. 16 신설>

제59조(교원채용 공고기간)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업화학과, 전기과, 금속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화공과, 전기통신설비과, 신소재금속과의 재적생으로 하며, 공업화학과, 전기과, 금속과에 소속된 교직원은 각각 화공과, 전기통신설비과, 신소재금속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개편 및 학과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명변경에 따른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이 시행당시 종전의 동아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아인재대학의 해당학과 및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교명변경에 따른 졸업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이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④(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학과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부 및 입학 정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부(학과),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및 교직원의 소속은 개편, 명칭변경, 통합학부(학과)·전공의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3년제) 과정이 3년제(4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3년제) 또는 3년제(4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 초과시에는 변경된 학제에 따른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본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기 취업생 출석 및 성적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졸업학기 취업생 출석 및 성적인정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졸업학기 취업생 출석 및 성적인정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하고 이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생부터 적용 한다.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학부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보 건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동아-년도-000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보 건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동아-년도-0001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학부(학과) 전공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보 건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4호<신설>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학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보 건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동아-년도-0001

별표 1 <2016. 2.22 개정>

종 별	해당학부(전공), 해당학과	비고
공 업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복지학부<학부통합></u> <u>토목과(야간)</u> <u>자동차정비튜닝전공<명칭변경></u> 	
예 술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복지학부</u> 미술전공 	
체 육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복지학부</u> <u>승마산업전공<폐지></u> 	
관 광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문화복지학부</u> 글로벌호텔조리전공 	
사회복지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선교복지학부</u> 사회복지(주,야), <u>사회복지사업전공<폐지></u> 사회복지행정전공, <u>청소년교육상담·평생교육복지전공(야)<명칭변경></u> 선교복지전공, 찬양복지전공 	
실용음악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선교복지학부</u> 실용음악전공 	
교 육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보 건 전문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기공과 ● 안경광학과 ● 응급구조과 ● 치위생과 ● 작업치료과 ● 임상병리과 ● <u>문화복지학부</u> 동물매개복지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동물간호전공 	
간호전문 학 사	간호과(3년제)	
간 호 학 사	간호학과(4년제)	
사회복지 학 사	사회·선교복지학과	

